

産業財産權制度 대폭 改正

1.13 公布...9.1부터 施行

特許法改正法律

法律第 4207號
1990.1.13 公布

〈前號에서 계속〉

第3章 審 査

第57條 (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 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特許出願 및 特許審議申請을 審査하게 한다.

② 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8條 (先行技術의 調査등) ① 特許廳長은 特許出願의 審査를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專門調査機關에 先行技術에 대하여 資料調査를 의뢰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은 特許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政府機關·당해 技術分野의 專門機關 또는 特許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에게 協調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特許廳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 또는 費用을 支給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規定된 專門調査機關의 지정 및 資料調査의 의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9條 (特許出願審査의 請求) ① 特許出願은 審査請求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審査한다.

② 特許出願이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5年이내에 特許廳長에게 그 特許出願에 관하여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다.

③ 第5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또는 第5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에 관하여는 第2項의 期間이 경과된 후에도 分割出願을 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다.

④ 出願審査의 請求는 취하할 수 없다.

⑤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는 期間내에 出願審査의 請求가 없는 때에는 그 特許出願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第60條 (出願審査의 請求節次) ① 出願審査의 請求를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出願審査 請求權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請求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提出年月日
3. 出願審査의 請求對象이 되는 特許出願의 표시

② 特許廳長은 出願公開전에 出願審査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出願公開時에, 出願公開후에 出願審査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特許廳長은 特許出願人이 아닌 者로부터 出願審査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特許出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61條 (優先審査) 特許廳長은 出願公開후 出願公告전에 特許出願人이 아닌 者가 業으로서 特許出願된 發明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特許出願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査官

으로 하여금 다른 特許出願에 우선하여 審査하게 할 수 있다.

第62條 (拒絕査定) 審査官은 特許出願이 다음 各號의 1(이하 “拒絕理由”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特許出願에 대하여 拒絕査定을 하여야 한다.

1. 第25條·第29條·第31條 내지 第33條·第36條 第1項 내지 第3項 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할 수 없는 경우
2. 無權利者에 의하여 特許出願된 경우
3.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4. 第42條 第3項 내지 第5項 또는 第45條에 規定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第63條 (拒絕理由通知) 審査官은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拒絕査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特許出願人에게 拒絕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64條 (出願公開) ① 特許廳長은 特許出願日(優先權主張을 隨伴한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第47條 第1項 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날)부터 1年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 特許出願에 관하여 特許公報에 게재한 出願公開를 하여야 한다. 다만, 第6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公告를 한 特許出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出願公開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發明이 第29條 또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될 수 없다는 취지의 情報를 증거와 함께 特許廳長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第66條 第4項은 第1項의 出願公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第1項의 出願公開에 관하여 特許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5條 (出願公開의 效果) ① 特許出願人은 出願公開가 있는 후 그 特許出願된 發明을 業으로 실시한 者에게 出願된 發明인

것을 書面으로 警告한 때에는 그 警告후부터 出願公告전에 그 發明을 業으로서 실시한 者에게 그 特許發明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補償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으며, 警告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出願公開가 된 發明인 것을 알고 出願公告전에 業으로서 그 發明은 당해 特許出願이 出願公告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의 행사는 第6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權利 및 特許權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第68條 第3項 및 第4項·第68條·第127條·第129條·第132條 또는 民法第760條 및 同法第76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民法第766條 중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날”은 “당해 特許出願의 出願公告日”로 본다.

第66條 (出願公告) ① 審査官은 特許出願에 대하여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拒絕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出願公告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特許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그 特許出願에 관하여 特許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告를 하여야 한다.

③ 特許廳長은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2月間 出願書類 및 그 부속물건을 特許廳에서 公衆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秘密取扱을 요하는 特許出願에 대하여는 秘密取扱의 解除時까지 出願公告를 保留하여야 하며 그 秘密取扱이 解除된 때에는 出願公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國防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出願公告를 하지 아니하고 特許査定을 할 수 있다.

⑤ 第2項의 出願公告에 관하여 特許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7條(出願公告의 特例) 審査官은 第34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正當한 權利者의 特許出願이 있을 때에는 無權利者의 特許出願에 대하여 이미 出願公告한 경우에는 그 正當한 權利者의 特許出願에 대하여는 다시 出願公告의 決定을 하지 아니하고 査定을 하여야 한다.

第68條(臨時保護의 權利) ① 特許出願人은 出願公告가 있는 때에는 出願公告日부터 業으로서 그 特許出願된 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② 第126條 내지 第132條의 規定은 第1項의 權利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出願公告후 特許出願이 포기·無效취하된 때 또는 特許出願의 拒絕査定이 확정된 때에는 第1項의 權利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第1項의 權利를 가진 者가 그 權利를 행사한 경우에 당해 特許出願이 포기·無效·취하된 때 또는 特許出願의 拒絕査定이 확정된 때에는 그 權利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損害를 賠償責任을 진다. 당해 特許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이 出願公告후의 補正 또는 補正却下에 의하여 特許權의 設定登錄時의 特許請求範圍에 포함되지 아니한 發明에 관하여 그 權利를 행사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69條(臨時保護의 權利行使와 訴訟節次의 중지) ① 法院은 第68條 第1項의 權利의 침해에 관한 訴의 제기 또는 假押留나 假處分의 申請이 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特許出願에 관하여 査定 또는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決定으로 그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法院은 중지의 이유가 消滅한 때 기타

事情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第1項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第70條(特許異議申請) ① 出願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特許出願公告日부터 2月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特許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特許出願된 發明이 第42條 第5項 또는 第45條에 規定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는 特許異議申請은 할 수 없다.

② 特許異議申請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特許異議申請書와 必要한 증거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71條(特許異議申請理由등의 補正) 特許異議申請人은 特許異議申請 期間의 경과 후 30日 이내에 特許異議申請書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補正할 수 있다.

第72條(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① 審査官은 特許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特許異議申請書 副本을 特許出願人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 審査官은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 경과 후에 特許異議申請에 대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 特許異議申請人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 경과후에 決定으로 特許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④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特許廳長은 第2項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特許出願人 및 特許異議申請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第73條(特許出願公告후의 職權에 의한 拒絕査定) ① 審査官은 出願公告后 拒絕理由를 발견한 경우에는 職權에 의하여 第

62條의 規定에 의한 拒絕査定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絕査定을 할 경우에는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異議申請이 있더라도 그 特許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을 하지 아니한다.

③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絕査定을 하는 경우에는 特許異議申請人에게 拒絕査定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第74條(特許異議申請의 競合) ① 審査官은 2 이상의 特許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 또는 決定을 併合하거나 分離할 수 있다. ② 審査官은 2 이상의 特許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特許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한 결과 그 異議申請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特許異議申請에 관하여는 決定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지 아니한 特許異議申請人에 대하여도 拒絕査定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第75條(特許査定) 審査官은 特許出願에 대하여 拒絕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特許査定을 하여야 한다.

第76條(査定의 方式) ① 査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特許廳長은 査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査定의 謄本을 特許出願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77條(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中止) ① 特許出願의 審査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訴訟節次가 完結될 때까지 그 特許出願의 審査의 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② 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査定이 확정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第78條(審判規定의 審査에의 準用) ① 第148條 第1項 내지 第2號 및 第7號의 規定은 特許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 第154條 第8項·第157條·第165條 第3項 내지 第6項 및 第166條의 規定은 特許異議申請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章 特許料 및 特許登錄등

第79條(特許料) ① 第8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特許權者는 特許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商工部令으로 정한다.

第80條(利害關係인에 의한 特許料의 납부)

① 利害關係人은 납부하여야 할 者의 意思에 불구하고 特許料를 납부할 수 있다.

② 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料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者가 현재 이익을 받는 限度에서 그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第81條(特許料의 추가납부) ① 特許權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特許權者는 第7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料 納付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6月 이내에 特許料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料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特許料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間내에 特許料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의 特許出願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特許權者의 特許權은 特許料를 납부할 期間이 경과한 때에 遡及하여 그 特許權이 消滅된 것으로 본다.

第82條(手數料) ①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特許出願人이 아닌 者가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후 그 特許出願書에 첨부한 明細書에 관한 補正 또는 補正却下에 의하여 特許請求範圍에 기재한 請求項의

數가 增加한 때에는 그 增加한 請求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審査請求料는 特許出願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 그 납부 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商工部令으로 정한다.

第83條 (特許料 또는 手數料의 減減) ① 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特許料 및 手數料는 第79條 및 第8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免除한다.

1. 國家에 속하는 特許出願 또는 特許權에 관한 手數料 또는 特許料
2. 第133條 第1項·第134條 第1項 또는 第13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의 無效審判請求에 대한 手數料

② 特許廳長은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 및 商工部令이 정하는 者가 한 發明에 관한 特許出願인 경우에는 第79條 및 第8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한 최초 3年分의 特許料 및 商工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權 및 手數料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商工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84條 (特許料등의 반환) 납부된 特許料 및 手數料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特許料 및 手數料가 錯誤로 인하여 납부된 때에는 그 납부된 날부터 5年 이내 납부한 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第85條 (特許原簿) ① 特許廳長은 特許廳에 特許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

1. 特許權의 設定·移轉·消滅·處分の 제한 또는 存續期間의 연장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 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の 制限
3. 特許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

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の 제한

② 第1項 및 規定에 의한 特許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磁氣데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登錄事項 및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特許發明의 明細書 및 圓圖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는 特許原簿의 일부로 본다.

第86條 (特許證의 교부) ① 特許廳長은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特許權者에게 特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特許廳長은 特許證이 特許原簿 기타 書類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特許證을 回數收 入 訂正交付하거나 새로운 特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特許廳長은 第135條 第1項의 訂正審判의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審決에 따라 새로운 特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5章 特許權

第87條 (特許權의 設定登錄) ① 特許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特許廳長은 第7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料를 납부하거나 第83條 1項 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特許料가 免除된 때에는 特許權의 設定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特許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特許權者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 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
2. 特許審號
3. 設定登錄의 年月日

第88條 (特許權의 存續期間) ①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出願公告가 있는 경우에는 그 公告가 있는 날부터, 出願公告가 없는 경우에는 特許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 부터 15年으로 한다. 다만, 特許出願日부

터 2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정당한 權利者의 特許出願에 대하여 第34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된 경우에는 第1項의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가 한 特許出願에 대한 出願公告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③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이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20年은 原特許出願의 出願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第89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 特許發明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등을 하여야 하고, 그 許可 또는 登錄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活性·安全性등의 試驗으로 인하여 長期間이 소요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發明으로서 그 特許發明이 2年 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第88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에 대하여 5年의 期間내에서 당해 特許權의 存續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第90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 ①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者(이하 “延長登錄出願人”이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延長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延長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3. 延長對象特許權의 特許番號 및 延長對象特許請求範圍의 표시
4. 延長申請의 期間
5. 第89條의 許可등의 내용

6. 商工部令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은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을 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出願하여야 한다. 다만, 第88條에서 規定하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만료전 6月 이후에는 할 수 없다.

③ 特許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을 하여야 한다.

④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그 存續期間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出願에 관하여 第91條 第1項의 拒絕査定이 확정되거나 特許權의 存續期間을 연장하는 登錄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特許廳長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特許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第91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拒絕査定) ① 審査官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이 다음 各號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出願에 대하여 拒絕査定을 하여야 한다.

1. 그 特許發明의 실시가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特許權者 또는 그 特許權의 專用實施權이나 登錄된 通商實施權을 가진者가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延長申請의 期間이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을 초과하는 경우
 4. 延長登錄出願人이 당해 特許權者가 아닌 경우
 5. 第90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延長登錄出願을 한 경우
 6.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이 2年 미만인 경우
- ② 特許權者에게 責任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期間은 第1項 第3號 및 第6號의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第92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査定등) ① 審査官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에 대하여 第91條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延長登錄査定을 하여야 한다.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延長登錄 査定이 있는 때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을 特許原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登錄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기재된 사항을 特許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特許權者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特許番號
3. 延長登錄의 年月日
4. 연장의 期間
5.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의 내용

第93條(準用規定) 第57條 第1項·第63條·第76條 및 第148條 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94條(特許權의 效力) 特許權者는 業으로서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特許權에 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10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實施權者가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5條(存續期間이 연장된 경우의 特許權의 效力) 特許權의 存續期間이 연장된 特許權의 效力은 그 延長登錄의 이유가 된 許可등의 대상물건(그 許可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用途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用途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特許發明의 실시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第96條(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特許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研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特許發明의 실시
 2. 國內을 통과하는데 불과한 船舶·항공기, 차륜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器具·裝置 기타의 물건
 3. 特許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물건
- ② 2 이상의 醫藥(사람의 疾病의 珍斷·輕減·治療·處置 또는 豫防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製造되는 醫藥의 發明 또는 2 이상의 醫藥을 混合하여 醫藥을 製造하는 방법의 發明에 관한 特許權의 效力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醫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第97條(特許發明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 보호범위는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第98條(他人의 特許發明등과의 관계)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特許發明이 그 特許發明의 特許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을 이용하거나 特許權이 그 特許發明의 特許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意匠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意匠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거나 第13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特許發明을 業으로 실시할 수 없다.

第99條(特許權의 讓渡 및 共有) ① 特許權은 이를 讓渡할 수 있다.

② 特許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③ 特許權이 公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그 特許發明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特許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特許權에 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第100條 (專用實施權) ① 特許權者는 그 特許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專用實施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 제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實施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實施權者는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③ 專用實施權者는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許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 없다.

④ 專用實施權者는 特許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⑤ 第99條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專用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01條 (特許權 및 專用實施權의 登錄의 效力) ①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特許權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處分の 제한

2. 專用實施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消滅 또는 處分の 제한

3.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消滅 또는 處分の 제한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專用實施權 및 質權의 相續 기타 一般承

繼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02條 (通常實施權) ① 特許權者는 그 特許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의 許諾을 받은 通常實施權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또는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 안에서 業으로서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③ 第107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거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에 한하여 移轉할 수 있다.

④ 第138條, 實用新案法 第33條 또는 意匠法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그 通常實施權者의 당해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과 함께 移轉되고 당해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이 消滅된 때에는 함께 消滅된다.

⑤ 第3項 및 第4項의 通常實施權은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許權者(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移轉할 수 없다.

⑥ 第3項 및 第4項의 通常實施權은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許權者(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⑦ 第99條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계속>